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117 발의연월일: 2024. 10. 31.

발 의 자:이해민·조 국·김준형

신장식 · 노종면 · 박민규

황운하 • 조인철 • 한민수

서왕진 · 차규근 · 김선민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유지 및 공 적책임 준수 여부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 의위원회는 심의규정에 '보도·논평의 공정성·공공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조치를 하고 있음.

그러나 공정성은 매우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공정성 심의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재량권이 과도하게 인정된다는 우려가 있고, 보도 공정성 심의에 따른 제재는 방송사 재승인 심사에 반영되는 만큼 자칫 정권에 비판적 보도를 하는 특정 매체를 길들이기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 방송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로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정성 심의 규정을 근거로 처분한 법정제재에 대해 대부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 용되었고, 일부 처분취소 판결이 내려지는 등 보도 공정성 심의에 대 한 내용상, 절차상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

미국 FCC는 공정성 원칙의 도입이 표현의 자유와 방송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미 1987년에 공정성 심의를 폐지했고,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주요국들은 방송 내용에 대한 규제는 반사회적 표현물 을 대상으로 최소화하고 뉴스 보도 진실성 등은 저널리즘의 영역이라 는 전제 하에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 중 보도에 관한 내용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정정보도·반론보도의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중규제에 해당한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보도·논평의 공정성에 관한 내용을 제외하고, 방송사업자가 보도 프로그램을 자체 심의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32조 및 제86조). 법률 제 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0호 중 "공정성·공공성에"를 "공공성에"로 한다.

제86조제1항 본문 중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이"를 "방송프로그램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3條(審議規程) ① (생 략)	第33條(審議規程) ① (현행과 같		
	승)		
② 第1項의 審議規程에는 다음	②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報道・論評의 <u>공정성・공공</u>	10 <u>공공성에</u>		
<u>성에</u> 관한 사항			
11. ~ 17. (생 략)	11. ~ 17. (현행과 같음)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6조(자체심의) ① 방송사업자	제86조(자체심의) ①		
는 자체적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방송프로그램(보도에 관한 방	<u>방송프로그램이</u>		
<u>송프로그램은 제외한다)이</u> 방			
송되기 전에 이를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체라디오방송			
사업자의 경우에는 방송권역			
청취자가 참여하는 방송평가회			
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			
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